



소통 변화 활력,
주민과 함께

2024. 4. 15.(월)
북천면사무소

이장협의회 회의자료



북천면

목 차

[총무부서]

○ 2024년 청년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1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홍보	1
○ 24년 1분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2
○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안내	3
○ 국가암검진 사업 안내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 협조	4
○ 202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	5
○ 2024년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 안내	6

[주민생활지원부서]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7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협조	8

[산업경제부서]

○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독려 안내	9
○ 봄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재난 대비 대응 철저	9
○ 24년 실외사육견 증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	10
○ 24년 귀농귀촌 화합선도 마을 선정 및 지원사업 안내	10
○ 24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11

[민원부서]

○ 살고싶은 별천지 하동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11
----------------------------------	----

I 2024년 청년대중 교통비 지원사업

신성용
(880-6333)

- 지원기간 : '24. 1월 ~ 6월
- 지원대상 : 경남에 주소를 둔 19세 ~ 24세 청년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남에 있는 1999. 1. 1.생 ~ 2005. 12. 31.생
- 지원내용 : '24. 1월 ~ 6월 선불형 교통카드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1인당 최대 6만원 지원
- 지원범위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경전철(김해↔부산), 지하철(양산↔부산)
- 신청기간 : '24. 3. 5.(화) ~ '24. 4. 30.(화)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할수 있도록 홍보 : 4. 30. (화) 까지

II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및 홍보

신성용
(880-6333)

< 고향사랑기부제란 ? >

- ▶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 제도

- 사업시행 : 2023. 1. 1. 시행
- 기부대상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세액공제 : 기부금의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지급 (최대 150만원)
- 기부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사이트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농협은행)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 안내 및 홍보 : 연중 상시

- 사업명 : 2024년 1분기 하동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 (3%이내)
- 지원금액 : 2024년 1월~3월 납부한 이자금액 (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분기별 신청 접수, 연 4회 (요건 충족 시 최장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 거주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4. 3.(수) ~ 4. 22.(월)<19일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 FAX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부서

[붙임 1]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 신청자격

1. 2024. 1. 1. 기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가구
2. 2024. 4. 3. 기준 현재 부부 모두 하동군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3. 2024. 4. 3.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또는 무주택 가구
4.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5. 주택기준

- ①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
- 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6. 대출용도 : ‘전세자금, 주거자금,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용도만 해당 (신용·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다. 하동군 및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당해연도 수혜자
※ 하동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라.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
(일반,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 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 예)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등에서 직원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주택구입대출을 받은 자
- 바.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전세임대 등) 거주자
- 사. 1가구 다주택 소유자
- 아.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을 임대·매매한 경우
- 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하동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차.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대출이자 지원 홍보 및 신청안내 : 4. 22.(월)까지

IV	2024년 경상남도 사회조사 안내	신성용 (880-6333)
-----------	---------------------------	-------------------

- 목적 :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관심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식형태 변화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기간 : 2024. 4. 19.(금) ~ 5. 8.(수)
- 조사대상 : 하동군 640개 표본가구*
 - *표본가구 : 2020 인구총조사 모집단에서 추출
- 조사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 조사내용 : 5개 분야 44개 항목(도 41개, 하동군 3개)
 - 보건, 가족가구, 사회, 안전, 환경
- 조사결과 활용
 - 정책수립에 반영하여 도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 시군, 유관기관, 연구원 등에 결과보고서 및 기초자료로 제공
- 법적근거 : 통계법 제 18조에 의거한 일반통계(제 217001호)
 - *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해 통계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
 - 하동군 기획예산과 담당자(055 - 880 - 2015)
 - 하동군 통계 상황실(055 - 880 - 2792 ~3)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조사원 방문시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홍보 : 5. 8. (수)까지

- 검진기간 : 2024년 12월 31일 까지
- 검진기관 : 지정된 암검진 병·의원(전국 가능함)
 - 검진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IN → 검진기관/병원 찾기
 - 하동군 관내 검진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검진 항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하동중앙의원	055-883-0222	○	○	○	○		
하동현대의원	055-882-7377	○	○	○			
하동군민여성의원	055-882-7770					○	

※ 검진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병·의원에 문의

- 검진 대상 및 방법
 - 짝수년도 출생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 / 대장암의 경우 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검사 필요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하지 않고,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비용 전액 본인부담
 - 검진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채변을 하셔서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받음

암종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간암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 +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 검사)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1년	대변검사(분변잠혈반응검사) : 이상소견 시 대장내시경검사 (단, 대장내시경검사 실시가 어려운 경우 대장이중조영검사 선택적 시행)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 암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54세 ~ 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로 흡연력이 하루 한갑 기준 30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2년	저선량 흉부 CT 검사

○ 암검진비용 지원 대상자(본인부담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 * 암검진비용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검진 비용 10% 본인 부담
- *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

[붙임1] 2024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문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국가암검진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대상자 안내 및 검진 독려

VI 202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

이덕희
(880-6335)

- 목 적 : 기후위기의 효과적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진단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 방문하여 배출 원인 분석 및 진단 컨설팅 실시
- 대 상 : 관내 주민
-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24.(수)
- 컨설팅 주요내용(방문 또는 전화상담)
 -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제시
 -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적인 사용 방법 안내
 - 에너지 절약 행사 물품 지급, 기타 궁금증 해결 등
- 신청방법 : 북천면사무소 총무계 방문 신청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컨설팅 희망자 신청 안내 : 4. 24. (수) 까지

- 신청대상 : 슬레이트가 보관되고 있는 필지의 토지소유자
- 지원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시행 이전에 자가 철거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및 주인없이 방치된 슬레이트
- 지원단가 : 16,500원/m²
- 지원금액 : 최대 352만원(초과비용 자부담)
 - 취약계층 : 전액지원
 - 마을회관, 일반가구 : 352만원 범위 내 작은 면적 우선 지원
- ※ 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동일 지번 내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우선순위 :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 다자녀가구)
 - ④ 일반가구 ※ 타조건 동일 시 작은 면적 우선 지원

[붙임3] 2024년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사업 안내 및 마을 주민 홍보 : 4. 19.(금) 까지

주민생활지원부서

I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협조

이수진
(880-6334)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비용) 지원

구 분		I 유형	II 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프로그램 			
	I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촉진수당)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증가 •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이내 취(창)시 잔여 기본 구직촉진수당의 50% 			
생계 지원	II 유형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15~25만원(1회)	월 최대28.4만원(6개월)	1회 2만원(3회)	조건부수급자(50만원)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성공수당) 6개월 연속시 50만원, 12개월 연속시 100만원 지원(총 150만원) * I · II 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이하인 자, 특정계층(소득무관) 			

○ 참여요건

구분	I 유형		II 유형		
연령	15~69세	청년 15~34세	특정계층 15~39세	청년 15~34세	중장년 35~69세
소득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120%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4억원이하	5억원이하	무관		

○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신청 또는 하동고용센터 방문 접수

○ 문의사항 : 055-880-5501 / 055-880-5599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관내 구직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II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홍보 협조

이수진
(880-6334)

- 신청기간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24. 6. 28.(금)까지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24. 4. 1.(월) ~ '25. 6. 30.(월)까지
- 지원대상 :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학생)에게 지원
(*교육급여란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내용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 지원수단 : 신청인 명의의 ①신용·체크카드, ②전용카드(선불카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
- 문의사항 : [사업안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사용문의] 카드사별 상담센터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I '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독려 안내

남은진
(880-6344)

- 사업개요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 신청기간 : 2024. 3. 4.(월) ~ 4. 30.(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신청)
- 신청현황 : 대상 692명 (4.9 기준 486명 70.2%)
- 주의사항 : 동일 경영지에 기본형 직불금, 임업직불금 중복수령 금지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미신청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 ~ 4월 30일까지

II 봄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재난 대비 대응 철저

남은진
(880-6344)

- 봄철산불대책기간 : 2024. 3. 1. ~ 2024. 5. 15.
-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 「**경계**」 단계 발령
- 발령일시 : 2024. 4. 8.(월) 15:00
 - 산림 내·산 연접지서 농산폐기물·생활쓰레기,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 절대금지**
 - 입산 시 성냥,ライター, 버너 등 화기물 휴대 금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금지
 - 화목보일러 및 아궁이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

[붙임4]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알림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산불예방 안내문 주민들에게 홍보 및 마을방송 : ~ 4월 30일까지

Ⅲ '24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

남은진
(880-6344)

-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자
- 지원내용 :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 지원기준
 - 암컷 : 400천원(자부담 10%)
 - 수컷 : 200천원(자부담 10%)
- 참고사항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수술 시 동물등록 병행(등록 거부시 사업 배제)
 - 5개월 이상의 개만 가능
- 신청기간 : ~ '24. 4. 23.(화)까지
- 신청방법 :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방문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주민들에게 홍보 : ~ 4월 23일까지

Ⅳ '24년 귀농귀촌 화합 선도마을 선정 및 지원사업

남은진
(880-6344)

- 사업개요 :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에 대한 마을평가를 통한 마을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전입실적 및 화합 우수사례 평가 후 3개 마을 선정
- 지원금액 : 10,000천원(최우수 5,000천원, 우수 3,000천원, 장려 2,000천원)
- 지원내용 : 선도마을 행사비 지원(화합 행사, 공동체 융화교육 등)
- 신청기간 : 2024. 7. 1.(월) ~ 7. 16.(화)
- 신청장소 : 북천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붙임5] 귀농귀촌 화합 선도마을 선정 및 지원사업 지침 및 신청서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해당 사업에 관심있는 마을 이장님들 신청 : 7.1일부터 ~ 7.16일까지

V

'24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남은진
(880-6344)

- 사업개요 : 농기계종합보험료 중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 경감
- 신청기간 : 2024. 4. ~ 12.
- 신청장소 : 지역 농축협
- 신청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관리하며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보장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의 자부담 일부 지원(40%)

[붙임6]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관심있는 농업인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 ~ 12월 말까지

민원부서

I

『살고싶은 별천지 하동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정순임
(880-6353)

- 감면대상 : 2024. 1. 1. ~ 2025. 12. 31.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
 -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 생애최초 주택 취득
 - 서민 주택 취득

- 감면 대상별 구체적 감면을 붙임 참조

[붙임7] 감면대상별 구체적 감면을

이장님 하셔야 할 일

- 하동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 연중 상시

[붙임 1]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신청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규신청자) ※ 모든 서류는 신청 공고일(2024. 4. 3.)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용도	발행처
①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공고문 붙임서류
②	신청인 통장, 신분증 사본 각 1부		신청자(사본)
③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확인서류 1부	전세계약 등 확인	신청자(사본)
④	대상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⑤	주택매입계약서 1부(사본 제출)	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신청자(사본)
⑥	건축물 대장 1부	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⑦	금융거래확인서 1부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기관 직인 날인, 신용(일반)대출은 지원 불가	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금융기관
⑧	대출이자 납입증명서류 1부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 대출금(이자) -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이자율, 이자액 확인	금융기관
⑨	(소득有)소득금액증명원(2022년) 또는 원천징수영수증(2023년) - 부부 각 1부 (소득無)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부부 각 1부	연소득 확인	홈택스, 근무처, 국세청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⑩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 부부 각 1부	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⑪	주민등록등본·초본 - 부부 각 1부 - 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
⑫	혼인관계증명서 1부	혼인기간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⑬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1부(세대원)★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 2022~2023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1주택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⑭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배우자 부모 기준으로 부부 각 1부씩	형제, 자매 확인	읍·면사무소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⑮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 수에 태아 포함	자녀수 확인	병원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매매, 신축의 경우

- ❶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❷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하동군을 제외한 경상남도 전체
- 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체

<앞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신청구분 내용기재	혼인신고 일		휴대전화	
	전거주지 주 택	<input type="checkbox"/> 무주택 <input type="checkbox"/> 임차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 택 현 황	소재지		소유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구입(신축) <input type="checkbox"/> 임차		
	금액	원	면적	m ²
대출현황	대출기관	대출금액		원
		대출잔액		원
	대출조건	연대출이자		%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천원 (*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기재)		
위와 같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1.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2. 신청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3.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4. <주택구입(신축)자금>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주택매입 계약서 1부 5. 건축물 대장 1부 6. 금융거래확인서 1부 (직인날인) - 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7. 대출납입증명서 1부 - 원금 + 이자납부내역 별도표기			8. (소득有)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부부 각 1부 (소득無)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부 9.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부부 각 1부 10.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11. 혼인관계증명서 12.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세대원) ※ 전국기준 비과세 증명으로 발급 1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의 부모 기준) 부부 각 1부	
읍·면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 및 동의서

1. 신청자격 등에 대한 서약

본인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신청자격에 해당됨을 서약하며, 서약(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혼인기간 및 다른 주택 소유 등 확인		본인자필명 서
1.혼인기간	본인 및 배우자는 년 월 일 결혼(혼인신고일 기준)한 신혼부부 가정임을 확인함.	
2.다른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및 배우자, 세대원은 신청 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지 않음.	
3.주거자금 대출	본인 및 배우자는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을 대출 받았음을 확인함.	
4.대상 주택 거주 여부	본인 및 배우자는 하동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2.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동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 담당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등·초본의 열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거나 전자적으로 본인의 민원 증명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의 신청 자격에 틀림없음을 서약하며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에 서약·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특수질환 검진)

구분	뇌질환 검진	특수질환 검진
사업대상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자(직급 125,000 원, 지역 67,500 원 이하)	
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검진기관	경상남도 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소 문의)	
검진절차	보건소에 신청서 및 동의서 접수 ▶ 개인별 지원대상자 적합·통보 ▶ 3개월 이내 희망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 기간 연장 필요할 경우 보건소 문의	
검진종목	신경학적 검사 뇌 MRI·MRA검사 [뇌MRI]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등 발견 [뇌MRA] 뇌동맥류, 뇌혈관 협착 등 발견	남·여 각 5종 검진 전립선암(남), 난소암(여), 갑상선기능검사, 동맥경화도, 심전도, 골밀도
지원범위	본인부담금 240,000원 이내 * 초과금액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65,000원 지원
비고	뇌질환 검진 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반드시 1차의료기관(의원)에서 진료이력서 발급 후 진료 필요	

문의사항 055-880-6623  하동군보건소(건강증진과)

♥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위,대장,유방암) 검진 대상자						
사업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검진기관	경상남도 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소 문의)						
검진절차	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병원 방문 ▶ 병원은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실시 ▶ 병원은 보건소에 비용정구						
검진종목	<table border="1"> <tr> <th>위암</th> <th>대장암</th> <th>유방암</th> </tr> <tr> <td>위내시경검사 시 수면비 지원</td> <td>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있음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지원</td> <td>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가 유방조영파괴검사 시 지원</td> </tr> </table>	위암	대장암	유방암	위내시경검사 시 수면비 지원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있음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지원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가 유방조영파괴검사 시 지원
위암	대장암	유방암					
위내시경검사 시 수면비 지원	분변잠혈검사 후 이상있음의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 시 수면비 지원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가 유방조영파괴검사 시 지원					
지원범위	1인 최대금액 6만원						
비고	위암, 대장암 수면내시경 동시 검진 시 ▶ 1인 최대 12만원 지원						

문의사항 055-880-6623  하동군보건소(건강증진과)

[붙임 3] 2024년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우선순위대상	<input type="checkbox"/> 기초수급자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input type="checkbox"/> 기타 취약계층
슬레이트 현황	발생연도 (방치일 경우 미기입)	발생사유	<input type="checkbox"/> 보관 <input type="checkbox"/> 방치
	슬레이트 장수	슬레이트면적 (m ²)	
	보관장소		
<p>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p> <p>※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원한도액(1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부담해야함을 안내받았습니다(보관슬레이트 해당)</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보관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하동군수 귀하</p>			
첨부서류	O 사진현황 및 위치도 1부.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보관장소	
<p style="text-align: center;">위치도(보관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 현황(대략적인 장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p>			

※ 보관된 슬레이트가 여러 장소에 있는 경우 모든 장소의 사진을 첨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알림

☐ **봄철 특별대책기간 : 2024. 3. 1. ~ 5. 15.**

↳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주요 협조사항**

○ **봄철 영농활동으로 인한 농부산물 및 각종 쓰레기 소각 일절 금지**

→ 산 또는 산연접지(100m이내) 소각 적발 시 과태료 즉시 부과

○ **취약시간대(일출 전, 일몰 후)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마을 주민들 이소각을 하지 않도록 홍보 부탁**

→ 현재 대부분 불법 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

○ **산림이나 산연접지에 불관련 인화성 물질(라이터 등)을 소지하지 않도록 당부**

☐ **과태료 부과 기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5항 제1호	10	10	10
차.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u>30</u>	40	50
카.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3항 제2호	10	20	30
타.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1호	10	20	20
하.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2호	10	20	20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 제3호	10	20	20

□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산불예방 홍보 방송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 신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첫째, 산 연접지 논, 밭두렁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둘째, 산림 내에서나, 산 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등은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셋째, 산림 내에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맙시다.

넷째, 노약자나 어린이는 인화물질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잘 지도합시다.

영농부산물, 쓰레기 불법소각행위 등 부주의한 행위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기간입니다.

만일 산연접지나 산림내에 불을 놓게 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게 될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2024년 귀농귀촌 화합 선도마을 선정 지침

-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읍면의 노력도 제고
-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귀농귀촌인 유치활동에 대한 마을별 평가를 통하여 마을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1 주요내용

- 사업대상 : 행정마을 319개소 중 3개소 선정
- 선정방법(100점)
 - 정량평가(70점) : 귀농귀촌인 전입 실적
 - 정성평가(30점) : 귀농귀촌 화합·활성화 우수사례
- 사업금액 : 10,000천원(군비 100%)
 - 최우수(1개 마을) : 5,000천원
 - 우수(1개 마을) : 3,000천원
 - 장려(1개 마을) : 2,000천원
- 지원내용 : 선정된 귀농귀촌 화합 선도마을 행사비 지원
 -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추진 가능한 모든 사업
 - 예시) 귀농귀촌인과의 화합 행사, 마을 공동체 융화교육 등

2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 선정대상 : 분야별 평가항목에 의거한 평가
- 선정기준
 - 귀농귀촌인 연령제한 : 1954. 1. 1. ~ 2004. 12. 31. 이내 출생한 자
 - 귀농귀촌인 전입일 : 2023. 7. 1. ~ 2024. 6. 30. 이내 전입한 자
 - 화합·활성화 사업 : 2023. 7. 1. ~ 2024. 6. 30. 이내 시행한 사업
- 평가항목 : 2개 분야(100점)
 - 정량평가(70점) : 귀농귀촌인 전입 실적
 - 정성평가(30점) : 화합·활성화 우수사례

분야(100점)	항 목	점 수	비 고
귀농귀촌인 전입 실적 (70점)	1~3명	30점	전입실적 인정 전입일 : 2023. 7. 1. ~ 2024. 6. 30.
	4~6명	35점	
	7~9명	40점	
	10~12명	45점	
	13~15명	50점	
	16~18명	55점	
	19~21명	60점	
	22~24명	65점	
	25명 이상	70점	
화합·활성화 우수사례 (30점)	화합·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1개당 5점 (최대 15점)	화합·활성화 사업 인정 시행일 : 2023. 7. 1. ~ 2024. 6. 30.
	사례 우수성	미흡/보통/우수 (5점/10점/15점)	

※ 주의사항

- 귀농귀촌인 전입 실적 : 매분기 제출하는 **귀농귀촌 현황보고서 활용**
- 귀농귀촌 화합·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 : **[붙임1] 확인서로 실적 인정**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사진, 읍면장·담당자 확인 필요)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귀농귀촌인 전입실적 높은 마을 우선 선정
- **2024년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사업 신청마을 지원 불가**
(2024년 융화교육 사업 신청마을 : 화개면 가탄·의신마을, 악양면 부계마을, 적량면 난정·신촌마을, 횡천면 마치마을, 고전면 주성·신월마을, 진교면 하평마을, 옥종면 북방·한계마을)

붙임1 **귀농귀촌 화합·활성화 사업 확인서**

읍 면		마을명	
사업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참여인원			
사업내용			
활동사진			
확인란	담당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읍면장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2024년 농기계종합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 사업 시행 계획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 대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료 중 농가부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시행 이전 2024. 1. 1. 이후 가입자 소급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하동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어법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하동군 및 지역농협 소유 농업기계 제외

■ 대상기종 : 12종(농식품부 농기계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 로우더

■ 사업내용 : 농기계종합보험료(국비)의 자부담 일부 지원(40% 지원)

※ 보조금 천원단위 미만 절사(천원단위 미만은 자부담 처리)

※ 문의 : 옥중농협 북천지점(055-882-9100)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감면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
- **감면율**
취득세 100%(280만원 한도)
- **감면요건**
 - 건축주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 **의무사항(감면세액이 추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거주(주인 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지방세법 제15조

- **감면대상**
무주택 1가구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 **감면율**
취득세율 2.8% 중 2% 비과세
- **감면요건**
 -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동산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는 부동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율**
취득세 100%
- **대부금 관련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살고 싶은 별천지 하동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하동군

취득세 더 절약하기

하동군청 재정관리과 055·880·2276~7



NEW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감면대상**
2024. 1. 1. ~ 2025.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 **감면을**
취득세 100%(500만원 한도)



-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거나,
 -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취득당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 **의무사항(감면세액이 추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중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중여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이 취득하는 주택

- **감면을**
취득세 100%(200만원 한도)

- **감면요건**
 - 기존자의 경우 부부 모두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취득당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종여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의무사항(감면세액이 추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
 -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중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서민주택 취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감면대상**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서민주택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 **감면을**
취득세 100%

- **감면요건**
 - 취득주택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 가격이 1억원 미만인것
 - 해당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 **의무사항(감면세액이 추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중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